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의 자격,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년후견제 이용 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 후견 사무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대상, 2)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3.4.)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에 약사와 영양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쉼터를 말한다.

가. 종일형 쉼터: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쉼터

나. 주간형 쉼터: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2. 동료지원쉼터는 2명 이상의 법 제3조제8호의 동료지원인을 갖추어야 한다.

3.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이용자의 활동 지원

나. 동료지원인의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 동료지지 기반 서비스 지원

다. 정신질환자들의 성향과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4에 따라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료지원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제4항 중 “수련기관”을 “수련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 교육과정의 적절성
3. 수련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수련환경의 적정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수련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 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 및 제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해당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조력서비스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절차조력서비스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③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3(절차조력인 자격 등) ① 절차조력인은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교육의 이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인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후견인이 선임될 정신질환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6에 따른 공공후견사업지원단에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6(공공후견사업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도의 운영·관리 등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비용 지원, 그 밖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7(후견사무 비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 성년후견 종료심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3. 후견인 양성,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양성과정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동료지원의 의미와 기술에 관한 사항
 -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양성과정 시간: 100시간 이상
 3. 양성과정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의 수료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받

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 1장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나.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4의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구분 \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이 론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개인심리치료 I	30	개인심리치료 II	30	집단치료 II	20
		심리평가 I	30	심리평가 II	30	임상심리연구방법	20
		정신사회재활이론	30	정신사회재활실제	30	가족치료	15
		면담기법	20	집단치료 I	30	소아청소년심리	15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30	신경심리평가	20	장애	
		정신약물학	10	지역사회심리학	10	노년기심리장애	15
						심리학적자문	15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 습	심리평가	330	심리/신경심리평가	280	심리평가	25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개인/집단심리치료	200	개인/집단심리치료	28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이 론	소 계	150				
		개인심리치료 I	30				
		심리평가 I	30				
		정신사회재활이론	30				
		면담기법	20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30				
		정신약물학	10				
		소 계	830				
	실 습	심리평가	33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정신사회재활	150				
		개별사례분석	200				
	학술활동		20				

2. 정신건강간호사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구분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이 론	건강사정및진단(Ⅰ)	30	건강사정및진단(Ⅱ)	50	건강사정및진단(Ⅲ)	3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6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6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30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26	정신건강행정 및 정책	10	사례관리(Ⅱ)(기관중 심)	40
		지역사회정신간호	25	사례관리(Ⅰ)(재택중 심)	30		
		간호연구	9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 습	건강사정및진단(Ⅰ)	150	건강사정및진단(Ⅱ)	150	건강사정및진단(Ⅲ)	15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36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53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500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240	사례관리(Ⅰ)(재택중 심)	150	사례관리(Ⅱ)(기관중 심)	230
		지역사회정신간호	40				
		간호연구	40				
		소 계	83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이 론	건강사정및진단(Ⅰ)	3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60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26				
		지역사회정신간호	25				
		간호연구	9				
		소 계	830				
	실 습	건강사정및진단(Ⅰ)	15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360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240				
		지역사회정신간호	40				

	간호연구	40				
학술활동		20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구분 \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이 론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정신건강기초	35	정신건강기초	20	정신건강기초	16
		사정 및 평가	20	사정 및 평가	40	사정 및 평가	36
		정신의학	25	정신의학	25	정신의학	6
		사회사업치료	20	사회사업치료	50	사회사업치료	36
		정신건강문제	10	정신건강문제	15	정신건강문제	6
		사회복지서비스	40				
	실 습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	260
		사회사업치료 III	250	사회사업치료 III	250	사회사업치료 III	27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이 론	소 계	150				
		정신건강기초	35				
		사정 및 평가	20				
		정신의학	25				
		<u>사회사업치료</u>	20				
		정신건강문제	10				
		사회복지서비스	40				
	실 습	소 계	830				
		<u>사회사업 사정</u>	25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I	250				
	학술활동		20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기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이 론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정신건강기초	30	정신건강작업치료	30	정신건강작업치료	20
		정신건강작업치료	20	평가Ⅱ		평가Ⅲ	
		평가Ⅰ		정신건강작업치료	60	정신건강작업치료	40
		정신건강작업치료	50	중재 및 치료Ⅱ		중재 및 치료Ⅲ	
		중재 및 치료Ⅰ		생애주기 정신건강	40	생애주기 정신건강	30
		생애주기 정신건강	30	작업치료Ⅱ		작업치료Ⅲ	
		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10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실 습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6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70
	학술활동		20		20		20
		합 계	1,000				
2급	이 론	소 계	150				
		정신건강기초	3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0				
		정신건강작업치료	50				
		중재 및 치료					
		생애주기 정신건강	30				
		작업치료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실 습	소 계	83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학술활동		2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수련기관에서 2개 이상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여 수련기관 전체가 아닌 해당 수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4제2항제1호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4제2항제3호	지정취소		
바.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지도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기관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지정취소		
4) 수련기관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취소		

비고: 지정 취소된 수련기관은 취소된 해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간 호 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약사	1명 이상을 둔다. 다만, 100명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다.	
영양사	입원 병상을 갖춘 경우, 1명 이상을 둔다.	「의료법」에 따른다.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 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교육훈련기간		수료 연월일		
교육훈련 기관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수료증 작성	→	수료증 교부
신청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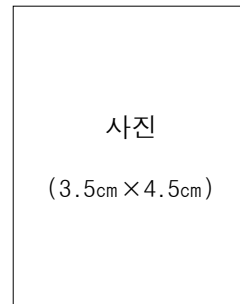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교육훈련기관:

교 육 기 간: . . . ~(시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
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훈련기관의 장

직인

백상지(150g/㎡)

비고: 1. 수료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수료증 발급대장

증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료증 번호	교육 시작일	교육 수료일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 9. (생략) ② ~ ④ (생략) <u><신 설></u>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 ----- ----- ----- ----- ----- ----- ----- ----- ----. 1. <u>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쉼터를 말</u>

한다.

가. 종일형 쉼터:일시적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
환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쉼터

나. 주간형 쉼터: 정신질환자
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쉼터

2. 동료지원쉼터는 2명 이상의
법 제3조제8호의 동료지원인
을 갖추어야 한다.

3.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
원 또는 이용자의 활동 지
원

나. 동료지원인의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 동료지지 기
반 서비스 지원

다. 정신질환자들의 성향과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
합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
계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이 동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4에 따라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료지원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
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
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
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
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
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
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
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
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련기관 지정 -----

-----.

제7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 교육과정의 적절성
3. 수련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수련환경의 적정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
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조
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
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
의3에 따라 3년마다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
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수련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
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평가

<신 설>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 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신 설>

<신 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 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해당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조력서비스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신

<신 설>

<신 설>

청을 받은 경우 절차조력서비스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③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3(절차조력인 자격 등)

① 절차조력인은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교육의 이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

한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인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신 설>

<신 설>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절차조력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후견인이 선임될 정신질환자등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6에 따른 공공후견사업지원단에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6(공공후견사업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도의 운영·관리 등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

<신 설>

건제 이용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 비용 지원, 그 밖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7(후견사무 비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 성년후견 종료심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신 설>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3. 후견인 양성,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양성과정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동료지원의 의미와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양성과정 시간: 100시간 이상

3. 양성과정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의 수료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 1장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나.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

<u>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57